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55 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김성원·이종성·임이자

金炳旭・김도읍・이주환

김정재 · 정진석 · 권명호

김승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 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, 관리 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, 통풍, 위생 및 냉·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,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3호가목 중 "관리사무소"를 "관리사무소(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"설치기준"을 "설치기준.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리사무소의 설치기준은 채광, 통풍, 위생 및 냉·난방 등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대시설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	<b></b>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"부대시설"이란 주택에 딸	13
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	
설비를 말한다.	
가. 주차장, <u>관리사무소</u> , 담장	가 <u>관리사무소(경</u>
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	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
	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
	<u>다)</u>
나. • 다. (생 략)	나.•다. (현행과 같음)
14. ~ 29. (생 략)	14. ~ 29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주택건설기준 등) ① 사업	제35조(주택건설기준 등) ①
주체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의	
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	
기준(이하 "주택건설기준등"이	
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
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부대시설의 <u>설치기준</u> <후단	3 <u>설치기준.</u> 이
<u>신설&gt;</u>	경우 관리사무소의 설치기준
	은 채광, 통풍, 위생 및 냉·난
	방 등 근로환경을 고려하여

	<u> 정한다.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